
FTA(자유무역협정) 기초 자료

2014. 10

한국시멘트협회

목 차

I. FTA 개요	1
1. FTA의 정의 및 종류	1
2. FTA의 분류	3
3. FTA의 추진요인 및 개방 추세	4
4. FTA의 경제적 효과	6
5. FTA의 체결절차	7
6. FTA의 추진동향	9
II. FTA 원산지 기준	11
1. 원산지 구분	11
2. 원산지 검증	12
3. 시멘트품목의 원산지 규정	17
4. 체결국간 원산지 기준 동향	18
III. FTA 국가별 관세율	19
1. 칠레	19
2. 싱가포르	20
3. EFTA	21
4. ASEAN	22
5. 인도	26
6. 미국	27
7. EU	28
8. 페루	29
9. 터키	30
10. 콜롬비아	31
11. 호주	32
12. 캐나다	33

I

FTA 개요

1. FTA의 정의 및 종류

□ FTA의 정의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지역 경제통합 형태의 협정
-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¹⁾의 주류임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EU)				

※ 지역주의의 형태는 흔히 참여한 ①국가간 경제통합 발전단계에 따른 통합 형태와 ②내용에 따른 형태로 구분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에게 부여하는 협정
- ※ 대표적인 예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²⁾이 있음

1)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지역간 경제통합을 말한다.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느슨한 형태다.

2) 1992년 12월 미국·캐나다·멕시코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 관세동맹((Customs Union)

- 다수국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 상호간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감면조치 취함
- 동맹국 이외의 여러 나라 수출품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공동관세를 부과
- 결성목적은 동맹국 상호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 혹은 철폐하여 무역자유화 실현
- ※ 대표적인 예로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³⁾과 베네룩스 관세동맹⁴⁾이 있음

○ 공동시장 (Common Market)

- 다수국이 무역 및 외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광역경제권 결성
- 역내국간의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경제 통합체 공동시장
- 궁극적 목표는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국내 시장과 동등하게 보장
- ※ 대표적인 예로는 EC(European Community: EU이전의 유럽공동체)가 있음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다수국이 경제동맹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초국가적인 기구 설립
- 각 국가의 통화, 금융, 재정, 사회, 경제정책 등을 하나로 통합
- 사실상 새로운 국가를 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
- ※ 대표적인 예로는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⁵⁾가 있음

3) 남아메리카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이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으며 1991년 인접국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참여하고 199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4) 제2차 세계대전 중 런던에 망명하였던 이들 3국 정부는 1944년 9월 관세동맹(關稅同盟) 조약에 조인하였는데, 그것을 베네룩스 관세동맹이라고 부르게 된 데에서 ‘베네룩스’라는 명칭이 생겼다. 동맹은 194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3국 상호간의 수입세를 철폐하는 동시에 제3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서 공통의 수입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5) 1993년 11월 1일에 창립되었다. 창립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2. FTA의 분류

□ FTA의 형태별(CEPA, EPA, SECA) 분류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 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 명칭은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 없음
- ※ 한/인도 CEPA의 경우, 내용은 FTA이나 인도측이 FTA에 대한 자국 내 국민 감성을 고려하여 FTA라는 용어 대신 CEPA라는 용어를 선호함에 따라 CEPA라는 용어 사용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연계협정

- 일본에서 FTA대신 만들어낸 용어임(예 : 일/멕시코 EPA)
- 관세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 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FTA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협정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전략적 경제보완협정

-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FTA 보다는 범위와 수준이 낮은 양자협정
-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간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80년에 체결된 몬테비데오 조약⁶⁾에 근거한 지역협정인 ECA(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를 모델로 함

※ 한국도 '06.2월 멕시코와 SECA 제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한 후 현재의 FTA 협상 단계까지 이르렀음

3. FTA 추진요인 및 개방 추세

6) 1980년 8월에 체결된 조약으로 12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참여하여 역내구간의 상호무역확대, 규제완화, 회원국간 경제보완 등 회원국간 경제협력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함

FTA 추진동기 및 사례

추진 동기	사 례
시장 확대 및 유지를 위한 동기	MERCOSUR, NAFTA 등 거의 모든 FTA
개방과 보호의 절충	멕시코(NAFTA)
국내경제 개혁의 촉진	멕시코, 칠레
다자주의의 한계점 보완	1990년대 후반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FTA
대외신인도 제고 및 대외협상력 강화	ANCOM ⁷⁾ , MERCOSUR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적 결속 강화	EU, CACM ⁸⁾

□ FTA 추진 요인

○ 실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159개국/2013년 기준) 수의 급증으로 결론 도출의 어려움에 따른 반작용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 (예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발전 등)

○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 개방과 보호의 절충수단으로써 FTA는 개방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을 촉진
- 새로운 양질의 제품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경쟁이 유발
- 그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과급으로 산업 발달을 촉진

○ 국가경제 패러다임 변화 및 국제협상력 강화

- 글로벌화로 국내경제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함
- 협상을 통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적 결속이 강화됨

7)안데스공동시장 (Andean Community) 라틴아메리카의 안데스 제국(諸國)에 속하는 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볼리비아·베네수엘라 등의 5개국 지역 경제통합시장

8)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이 1961년도에 설립한 공동시장이다. 그러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간 분쟁, 회원국간 무역불균형 심화로 1970년대에 사실상 기능을 상실

□ FTA 개방 추세

FTA 개방 추세

구 분	GATT(1948~1994)	WTO(1995~2000)	FTA(2000~)
주요목적	다자간 관세인하로 국제 무역확대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WTO체제를 바탕으로 뜻 맞는 나라끼리 관세장벽 제거
법인여부	법인또는 법인격의 기구 조직없이 협정체제로 운영	스위스(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협정 당사국 관련부처간에 협의하에 운영
주요대상	주로 공산품	공산품, 농산물, 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규범 등으로 적용확대	- 좌 동 - 서비스, 투자자유화 포함
기본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	- 좌 동 -	최혜국대우원칙의예외 허용, 균형적 상호이익
무역규제	긴급수량제한(Safe Guard)허용	긴급수량제한 허용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긴급수량제한 허용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원산지 검증

○ 1995년 WTO 출범 이후부터 활성화

- WTO출범 이전에는 상품관세인하로 인한 시장접근성 강화 및 교역확대가 주요 목적이며 공산품 위주로 교역이 이루어짐
- WTO출범이후 공산품뿐만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유치, 경제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하에서 교역이 확대

○ 2000년대 이후에는 적용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
-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이 주요 원인

4. FTA의 경제적 효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효과	내용	사례
무역증진효과	FTA 체결당사국 간의 무역창출	*NAFTA: 미국→멕시코162% 수출증가 *MERCOSUR:역내수출 393% 증가 *EU-칠레 FTA:칠레→EU 11.4% 수출증가
경쟁제고효과	FTA 상대국 기업간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가	*미-요르단 FTA:요르단 경제상황→개방적, 경쟁적, 유망한 경제국으로 인식
성장효과 (자본축적효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무역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NAFTA:멕시코 경제성장률(1995년-6.2%→1997년7.0%) *EU:동유럽 경제성장률(-1%→3.6%)
해외직접투자 유입효과	시장 확대와 관세철폐로 인한 해외투자 증가	*NAFTA:캐나다→미국 FDI 200%증가 *EU:동유럽 지역에서의 투자 269% 증가
대외협상력 재고효과	FTA를 통해 단일경제권으로써 협상력 제고	*MERCOSUR:FTA,EU와 협상에서 협상력 발휘 *ASEAN:역외국과 협상에서 일경제권으로의 협상력 발휘
기타	경제 외적인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이득	*미/요르단 FTA:정치적 유대관계 강화 *TDCA:남아공의 정치적 안정 목적

○ 교역량 증가

- 상대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를 제거하는 반면,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조치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의 교역 증가
- 생산요소가 역내국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경제의 생산규모 및 무역 규모가 증가(Trade creation)되는 효과가 발생
- FTA 체결로 역외국과의 무역이 역내국과의 무역으로 전환

○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강화

- FTA 체결로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외국기업에게 시장 확대 효과를 낳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유인

※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이전 1993년까지 외국인 투자규모가 40억불 수준이었으나 1994년 NAFTA 가입 후 100억불 수준으로 확대

○ 수출국가위주로 산업전환 및 재편

- FTA 체결로 인해 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자원의 재분배, 인력 및 산업구조의 재편 가속화
- 경제 전반에 대한 의식구조 변화 및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대항력 향상
- 국내기업의 개발이 촉진되고 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 품질수준 개선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이 강화

5. FTA 체결절차

FTA 협상단 조직 구조



□ 일반적인 체결 절차(대통령훈령 121호 기준)

○ 준비 및 여건 조성

- 양측 통상담당기관, 민간 기관이 FTA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공동연구 실시

- 외교통상부 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설치
 - 위원장 1명, 위원 15명 내외(각 정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추천)
 -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추진회의가 포함
-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견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자문회의를 포함
 - 의장 1명, 위원 30명 내외(위원장 및 중앙행정기관 추천, 대외경제전문가)
- 필수 절차로 공청회 개최
 - 관련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며 그 결과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제출됨

○ 협상개시 선언

-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를 정식선언

○ 협상 진행 : 분과별 협상 진행

- 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 ※ 칠레와의 협상은 첫 번째로 34개월, 한/싱가포르FTA는 11개월, 한/EFTA FTA는 6개월 한/ASEAN과는 1년 4개월, 한/미는 10개월 정도 소요

○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보통 국장급)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이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함

○ 협상 정식서명

-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 후 정식 서명

○ 협상 국회 비준절차

- 정식서명 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를 있고,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체약국간 통보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

6. FTA 추진동향

FTA 발효 국가(9개국)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칠레	99년 12월 협상개시 → 03년 2월 서명 → 04년 4월 발효	최초의 FTA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4년 1월 협상개시 → 05년 8월 서명 → 06년 3월 발효	ASEAN시장의 교두보
EFTA	05년 1월 협상개시 → 05년 12월 서명 → 06년 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05년 2월 협상개시 → 06년 8월 서명(상품무역) → 07년 6월 발효 → 07년 11월 서명(서비스무역) → 09년 5월 발효	우리의 제5위 교역 상대국
인도	06년 3월 협상개시 → 09년 8월 서명 → 10년 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 시장
EU	07년 5월 협상개시 → 10년 10월 서명 → 11년 7월 발효	세계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09년 1월 협상 개시 → 11년 3월 서명 → 11년 8월 발효	북중미시장교두보
미국	06년 6월 협상개시 → 07년 6월 서명 → 12년 3월 발효	거대선진경제권
터키	10년 4월 협상개시 → 12년 8월 서명 → 13년 5월 발효	주요교역국

FTA 타결 국가(2개국)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콜롬비아	09년 12월 협상개시 → 12년 8월 서명	중남미 3위 시장 진출
캐나다	05년 7월 협상개시 → 13년 11월 제14차 협상	북미선진시장
호주	09년 5월 협상개시 → 13년 12월 실질적 타결 (협정문 가서명 14년 상반기 예정)	오세아니아 부국

FTA 협상 국가(7개국)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인도네시아CEPA	12년 7월 협상개시 → 13년 11월 제6차 협상	동남아시아 주요자원국
중국	12년 5월 협상개시 → 14년 1월 제9차 협상	우리의 제1위 교역상대국
뉴질랜드	09년 6월 협상개시 → 10년 4월 제4차 협상	오세아니아진출
베트남	12년 9월 협상개시 → 13년 10월 제3차 협상	동남아시아 주요자원국
중-일	13년 3월 제1차 협상 → 13년 11월 제3차 협상	동아시아 교류확대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RCEP) ⁹⁾	13년 3월 제1차 협상 → 13년 11월 제3차 협상	아시아 오세아니아 교류확대

협상 여건 조성 및 공동연구 중인 FTA(7개국)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일본	03년 12월 협상개시 → 12년 6월 제3차 실무협의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
멕시코	06년 2월 협상개최 → 08년 6월 제2차 협상	북중미 교류확대
10) 걸프협력회 의 (GCC)	08년 7월 1차 협상 → 09년 7월 제3차 협상	중동 산유국과의 교역
11) 남미공동시 장(MERCOSUR)	05년 5월 공동연구개시 → 09년 7월 공동협약체 설립 MOU 체결	남미교역확대
이스라엘	09년 5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 10.8월 연구종료	중동거점지역
한-중미	10년 10월 공동연구개시 → 11.4월 연구종료	북중미 교역확대
12)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 (TPP)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브루나이 등 6개국 예비양자협의 준비중(14년 3월)	환태평양 교역확대

9)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10)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 1981년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 협력회의

11)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중남미 4 개국이 출범시킨 공동시장

1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05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맺어진 협력체제. 이후 미국·호주, 일본 등이 참여를 선언하여 2013년 4월 현재 12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

II

FTA 원산지 규정

1. 주요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 동향

○ 일반기준

① 완전생산

- 다른국가의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원재료 및 생산과정이 100%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인정

② 역내가공원칙

-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100%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불인정

③ 충분가공원칙

- 역내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④ 직접운송원칙

-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원산지가 아닌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 원산지로 불인정
※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물품의 운송또는 보전에 필요한 작업만 이행하거나 단순 경유가 서류상으로 증명이 된다면 직접운송으로 인정

⑤ 누적기준

- FTA 상대국간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최종 생산한 경우 사용된 원재료를 국산재료로 간주(ex 필리핀 원재료를 수입·가공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출 시 같은 아세안 FTA 교역국이므로 필리핀 원재료는 국산재료로 인정)

⑥ 미소기준

-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료가 소량 사용되더라도 해당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⑦ 중간재

- 체결국과의 중간재 규정에 따라 역외산 원재료와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재(반제품) 생산 시 중간재를 원산지로 인정

⑧ 세트 물품

-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두 개 이상의 물품중 하나가 역외산일 경우에 세트가격 일정수준 이하이며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로 인정

2. 원산지 검증

□ 원산지 검증 동향

○ 원산지검증 의의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가함

○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 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

○ 원산지검증 목적

-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 원산지검증 방법

-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실시하고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 검증방식 적용
- 검증주체별 유형
 -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아시아형)

FTA체결국간 원산지 규정

국가	간접검증	회신	직접검증
한·칠레	수출국 세관에 정보요청	-	정보요청/서면 질의/방문조사
한·싱가 포르	수출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	-	방문조사
한·EFT A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 과정 참관	10개월	없음
한·아세 안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2개월	방문조사
한·인도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3개월	방문조사
한·EU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10개월	공동조사
한·페루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 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150일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 하는 방문 조사
한·미	간접검증 방식 적용(섬유제품에 한함)	섬유 : 6개월	정보요청, 서면 질의, 방문조사
한·터키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10개월	정보요청/서면 질의/방문조사

□ 원산지 검증 주요 체크포인트

○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구분	적정성 여부
기관발급	· 계약국 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자율발급	· 계약국 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 수출자가 수출관련 서류 보관의무를 지는 자인지 여부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 유효기간 경과 여부

- 원산지검증이후 보통1~2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추세임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2년	12월	1년	1년	12월	1년	1년	4년	1년
제5.2조	제5.2조	제5.2조	부록1 제10조	제4.5조	제18조	제4.3조	제6.15조	제1조

○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여부
-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여부
-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원칙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 거래
 - 비당사국 중개인이 개입하여 송품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 인정
 - 한·칠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 명시한 경우 가능
-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 협정관세 대상 품목 여부 또는 양허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수입 연도 또는 특정기간 해당 세율(계절관세 등) 적용 적정 여부
 - 한·미 FTA 포도 : 10.16~4.30('12년 세율 24%), 5.1~10.15('12년 세율 42.3%) 적용

○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불인정)
-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불인정)

○ 운송요건 충족 여부

-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특혜 제공

○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보관주체별 서류요약

보관주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 거래 계약서 • 수입물품 운송 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통보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사본 • 수출품 출납 서류 • 수출품 구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통보서 사본 • 수출물품·재료 생산,구매,출납 서류 • 공정명세서 • 원가계산서 • 수출품 공급 계약서 등

□ 원산지 검증 조치 이후

○ 협정관세 적용보류(특례법 제17조)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진행시 검증기간 중에 추가 수입신고 되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검증 종결 시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제도

적용보류 요약

국가	
대상물품	조사대상 수입자가 추가로 수입한 조사대상 물품 및 동종동질 물품
시기	원산지검증을 시작한 날(서면조사 통지일) ~ 검증결과 통지일
공지	FTA 포털 홈페이지 > 원산지검증 > 「협정관세 적용보류」 게시
해제	원산지검증 결과 대상물품의 원산지에 문제가 없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통지서 (서식16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를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해제내역을 시스템에 등록
사후조치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 환급

○ 협정관세 적용제한(특례법 제16조 제1항)

- 아래의 사유에 해당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
 -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 협정관세 적용제한 상세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현지조사시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빙자료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한 경우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 수입자가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대상자가 세관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불성실하게 증명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수출자 등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여 그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제한
-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 원산지규정 위반 시 과태료 및 형벌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특혜세율 사후관리 위반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정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불이행자 •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형벌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유지의무 위반 세관공무원 · 과세자료 용도의 사용 세관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 허위, 부정, 신청, 발급, 작성, 교부한 자 ·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 ·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 ·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한 자 · 특정물품을 용도의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발급·작성 교부한 자

3. 시멘트품목의 원산지 규정

시멘트품목의 주요 원산지 규정

국가	원산지규정		
세번변경 기준①	- CC(Change of Chapter) : HS번호 앞의 2자리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 HS번호 앞의 4자리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 HS번호 앞의 6자리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부가가치 기준②	부가가치비율(공제법)=	$\frac{\text{상품가격}-\text{비원산지재료비(VOM)}}{\text{상품가격(AV)}}$	× 100
	부가가치비율(직접법)=	$\frac{\text{원산지재료비(VOM)}}{\text{상품가격(AV)}}$	× 100

□ 시멘트 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한 구분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적용 시

- CTH를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수입된 클링커를 통한 생산이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음
- HS코드 2523100000(크링카)를 수입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을 때 상품의 HS코드 앞의 4자리가 2523이 아닌 다른 HS코드의 품목으로 생산되어야 원산지로 인정

- 시멘트 품목의 HS코드는 모두 앞의 4자리가 2523이기 때문에 CTH를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적용 시 근본적으로 크링카수입을 통한 시멘트 제조가 불가능

○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계산의 복잡함과 검증방법의 어려움이 발생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직접검증이 어려우며 검증 시 많은 경비 소요
 - 클링커의 제조 단가를 속여 부가가치 비율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출 가능성 존재

4. 체결국간 원산지 기준 동향

- 세번변경기준 및 (CC, CTH, CTSH) 부가가치 기준(RVC)이 체결국간의 시멘트품목에 많이 적용되는 추세임

FTA체결국간 원산지 규정

국가	원산지기준	원산지규정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52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C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ASE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EU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or RVC35
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CTH or RVC35
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CTH
호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CTH
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CTH

Ⅲ

FTA 주요국가 관세 양허표

1. 칠레[관세종료]

□ 수출 관세율(칠레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 유형	기준 세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멘트클링커 (25231000)	5년	6	5.0	4.0	3.0	2.0	1.0	0					
백색시멘트 (25232100)	10년	6	5.5	4.9	4.4	3.8	3.3	2.7	2.2	1.6	1.1	0.6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	10년	6	5.5	4.9	4.4	3.8	3.3	2.7	2.2	1.6	1.1	0.6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10년	6	5.5	4.9	4.4	3.8	3.3	2.7	2.2	1.6	1.1	0.6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10년	6	5.5	4.9	4.4	3.8	3.3	2.7	2.2	1.6	1.1	0.6	0

□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칠레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 유형	기준 세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5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5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즉시철폐	5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즉시철폐	8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즉시철폐	5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즉시철폐	5										

2. 싱가포르[관세종료]

수출 관세율(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백색시멘트용 시멘트클링커 (25231010)	즉시철폐	0										
시멘트클링커 (25231090)	즉시철폐	0										
백색시멘트 (25232100)	5년	5	4	3	2	1	0					
기타 착색된 포틀랜드시멘트 (25232910)	즉시철폐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90)	즉시철폐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즉시철폐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즉시철폐	0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싱가포르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5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5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즉시철폐	5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즉시철폐	8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즉시철폐	5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즉시철폐	5										

3.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관세종료)

수출 관세율(EFTA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0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즉시철폐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즉시철폐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즉시철폐	0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EFTA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5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5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즉시철폐	5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즉시철폐	8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즉시철폐	5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즉시철폐	5										

4. ASEAN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베트남 수출 관세율(베트남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 유형	기준 세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2020	2021~2037
백색시멘트용 시멘트 클링커 (25231010)	13년까지 관세철폐	30	25	20	20	15	15			
기타 시멘트 클링커 (25231090)	13년까지 관세철폐	35	35	25	25	20	20			
백색시멘트 (25232100)	21년까지 20% 철폐	35	40	40	40	40	40	40	40	32
착색된 시멘트 (25232910)	21년까지 20% 철폐	35	40	40	40	40	40	40	40	32
기타 (25231090)	13년까지 관세철폐	35	35	25	25	20	2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21년까지 20% 철폐	40	40	40	40	40	40	40	40	32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13년까지 관세철폐	40	40	40	40	40	40			

□ 미얀마 수출 관세율(미얀마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 유형	기준 세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백색시멘트용 시멘트클링커 (25231010)	16년까지 관세철폐	1	1	1	1	1	1	1	1	1		
시멘트클링커 (25231010)	16년까지 관세철폐	1	1	1	1	1	1	1	1	1		
백색시멘트 (25232100)	16년까지 관세철폐	1	1	1	1	1	1	1	1	1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90)	16년까지 관세철폐	1	1	1	1	1	1	1	1	1		
착색된 시멘트 (25232910)	16년까지 관세철폐	1	1	1	1	1	1	1	1	1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16년까지 관세철폐	1	1	1	1	1	1	1	1	1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16년까지 관세철폐	1	1	1	1	1	1	1	1	1		

□ **캄보디아 수출 관세율**(캄보디아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 세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8	2020
백색시멘트용 시멘트클링커 (25231010)	초민감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기타시멘트클링커 (25231090)	초민감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백색시멘트 (25232100)	20년까지 관세철폐	15	15	10	10	10	5	5	5	0-5	0-5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90)	초민감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착색된 시멘트 (25232910)	초민감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20년까지 관세철폐	15	15	10	10	10	5	5	5	0-5	0-5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20년까지 관세철폐	15	15	10	10	10	5	5	5	0-5	0-5	0

□ **라오스 수출 관세율**(라오스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 유형	기준 세율	2008 2012	2013	2014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백색시멘트용 시멘트클링커 (25231010)	18년까지 관세철폐	5	5	5	5	5	4	3	2	1	0		
기타 시멘트클링커 (25231090)	18년까지 관세철폐	5	5	5	5	5	4	3	2	1	0		
백색시멘트 (25232100)	18년까지 관세철폐	5	5	5	5	5	4	3	2	1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90)	18년까지 관세철폐	10	10	6	5	5	4	3	2	1	0		
착색된 시멘트 (25232910)	18년까지 관세철폐	10	10	6	5	5	4	3	2	1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품목없음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18년철폐	5	5	5	5	5	4	3	2	1	0		

□ 태국 수출 관세율(태국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08	2009	2010	2011	2012
백색시멘트용 시멘트클링커 (25231010)	10년까지 관세철폐	10	5	3	0		
기타시멘트클링커 (25231090)	10년까지 관세철폐	10	5	3	0		
백색시멘트 (25232100)	10년까지 관세철폐	10	5	3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90)	10년까지 관세철폐	10	5	3	0		
착색된 시멘트 (25232910)	10년까지 관세철폐	10	5	3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10년까지 관세철폐	10	5	3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10년까지 관세철폐	10	5	3	0		

□ 필리핀 수출 관세율(필리핀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08	2009	2010	2011	2012
백색시멘트용 시멘트클링커 (25231010)	09년까지 관세철폐	3	3	0			
기타시멘트클링커 (25231090)	09년까지 관세철폐	0	3	0			
백색시멘트 (25232100)	09년까지 관세철폐	3	5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90)	즉시철폐	0	3	0			
착색된 시멘트 (25232910)	09년까지 관세철폐	5	5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09년까지 관세철폐	3	3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즉시철폐	0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출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백색시멘트용 시멘트클링커 (25231010)	즉시철폐	0									
기타시멘트클링커 (25231090)	즉시철폐	0									
백색시멘트 (25232100)	즉시철폐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90)	즉시철폐	0									
착색된 시멘트 (25232910)	즉시철폐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즉시철폐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즉시철폐	0									

□ 수입 관세율 (한국에서 ASEAN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16년이후 0~5감축	5	5	5	5	5	5	5	5	5	0-5
백색시멘트 (2523210000)	16년이후 0~5감축	5	5	5	5	5	5	5	5	5	0-5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16년이후 0~5감축	5	5	5	5	5	5	5	5	5	0-5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09년이후 즉시철폐	8	8	0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16년이후 0~5감축	5	5	5	5	5	5	5	5	5	0-5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08년이후 즉시철폐	5									

5. 인도

□ 수출 관세율(인도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 세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멘트클링커 (25231000)	17년까지 관세철폐	12.5	12.5	9.4	7.8	6.2	4.7	3.1	1.6	0
백색시멘트 (25232100)	17년까지 관세철폐	12.5	12.5	9.4	7.8	6.2	4.7	3.1	1.6	0
보통(건조)포틀랜드시멘트 (25232910)	17년까지 관세철폐	12.5	12.5	9.4	7.8	6.2	4.7	3.1	1.6	0
보통(착색)포틀랜드시멘트 (25232920)	17년까지 관세철폐	12.5	12.5	9.4	7.8	6.2	4.7	3.1	1.6	0
포틀랜드 포졸라나시멘트 (25232930)	17년까지 관세철폐	12.5	12.5	9.4	7.8	6.2	4.7	3.1	1.6	0
포틀랜드슬래그시멘트 (25232940)	17년까지 관세철폐	12.5	12.5	9.4	7.8	6.2	4.7	3.1	1.6	0
기타포틀랜드시멘트 (25232990)	17년까지 관세철폐	12.5	12.5	9.4	7.8	6.2	4.7	3.1	1.6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17년까지 관세철폐	12.5	12.5	9.4	7.8	6.2	4.7	3.1	1.6	0
고 알루미나내화시멘트 (25233000)	17년까지 관세철폐	12.5	12.5	9.4	7.8	6.2	4.7	3.1	1.6	0
기타 (25239090)	17년까지 관세철폐	12.5	12.5	9.4	7.8	6.2	4.7	3.1	1.6	0

□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인도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 세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17년까지 관세철폐	5	4.4	3.7	3.1	2.5	1.9	1.3	0.6	0
백색시멘트 (2523210000)	17년까지 관세철폐	5	4.4	3.7	3.1	2.5	1.9	1.3	0.6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17년까지 관세철폐	5	4.4	3.7	3.1	2.5	1.9	1.3	0.6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17년까지 관세철폐	8	7	6	5	4	3	2	1	0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17년까지 관세철폐	5	4.4	3.7	3.1	2.5	1.9	1.3	0.6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17년까지 관세철폐	5	4.4	3.7	3.1	2.5	1.9	1.3	0.6	0

6. 미국(관세종료)

□ 수출 관세율(미국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멘트클링커 (25231000)	즉시철폐	0							
백색시멘트 (25232100)	즉시철폐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	즉시철폐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즉시철폐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즉시철폐	0							

□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5							
백색시멘트 (2523210000)	5년	5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5년	5	4	3	2	1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3년	5.3	2.6	0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즉시철폐	5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5년	5	4	3	2	1	0		

7. EU[관세종료]

□ 수출 관세율(EU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멘트클링커 (25231000)	즉시철폐	1.7						
백색시멘트 (25232100)	즉시철폐	1.7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	즉시철폐	1.7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즉시철폐	1.7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3000)	즉시철폐	1.7						

□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EU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5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5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16년까지 관세철폐	5	4.1	3.3	2.5	1.6	0.8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16년까지 관세철폐	8	6.6	5.3	4.0	2.6	1.3	0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즉시철폐	5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16년까지 관세철폐	5	4.1	3.3	2.5	1.6	0.8	0

8. 페루[관세종료]

□ 수출 관세율(페루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 세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0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즉시철폐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즉시철폐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즉시철폐	0						

□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페루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 세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5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5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즉시철폐	5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즉시철폐	8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즉시철폐	5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즉시철폐	5						

9. 터키(관세종료)

□ 수출 관세율(터키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1.7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1.7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즉시철폐	1.7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즉시철폐	1.7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즉시철폐	1.7					

□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터키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6년차 관세철폐	5	4.2	3.3	2.5	1.7	0.8	0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5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6년차 관세철폐	5	4.2	3.3	2.5	1.7	0.8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8년차 관세철폐	8	7.0	6.0	5.0	4.0	3.0	2.0	1.0	0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6년차 관세철폐	5	4.2	3.3	2.5	1.7	0.8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8년차 관세철폐	5	4.4	3.8	3.1	2.5	1.9	1.3	0.6	0

10. 콜롬비아

□ 수출 관세율(콜롬비아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6년차 관세철폐	10	8.3	6.7	5.0	3.3	1.7	0
백색시멘트 (2523210000)	6년차 관세철폐	10	8.3	6.7	5.0	3.3	1.7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6년차 관세철폐	10	8.3	6.7	5.0	3.3	1.7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6년차 관세철폐	5	4.2	3.3	2.5	1.7	0.8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00)	6년차 관세철폐	10	8.3	6.7	5.0	3.3	1.7	0

□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콜롬비아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5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5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즉시철폐	5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즉시철폐	8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즉시철폐	5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즉시철폐	5						

11. 호주(관세종료)

수출 관세율(호주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시멘트클링커 (25231000)	즉시철폐	0	0					
백색시멘트 (25232100)	즉시철폐	0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	즉시철폐	0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즉시철폐	5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즉시철폐	5	0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호주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7년차철폐	5	4.3	3.6	2.9	2.1	1.4	0.7	0
백색시멘트 (2523210000)	7년차철폐	5	4.3	3.6	2.9	2.1	1.4	0.7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7년차철폐	5	4.3	3.6	2.9	2.1	1.4	0.7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7년차철폐	8	6.9	5.7	4.6	3.4	2.3	1.1	0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7년차철폐	5	4.3	3.6	2.9	2.1	1.4	0.7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7년차철폐	5	4.3	3.6	2.9	2.1	1.4	0.7	0

12. 캐나다(관세종료)

수출 관세율(캐나다에서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시멘트클링커 (25231000)	즉시철폐	0	0					
백색시멘트 (25232100)	즉시철폐	0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	즉시철폐	0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	즉시철폐	5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00)	즉시철폐	5	0					

수입 관세율(한국에서 캐나다에 부과하는 관세율)

(단위:%)

품 목	관세유형	기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즉시철폐	5	0					
백색시멘트 (2523210000)	즉시철폐	5	0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0000)	3년차철폐	5	3.3	1.7	0			
알루미나시멘트 (2523300000)	즉시철폐	8	0					
슬래그시멘트 (2523901000)	즉시철폐	5	0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9000)	3년차철폐	5	3.3	1.7	0			